

주부 가사노동 대가 너무 적다

교통사고로 아내 잃은 홍성주씨 보험회사 배상액에 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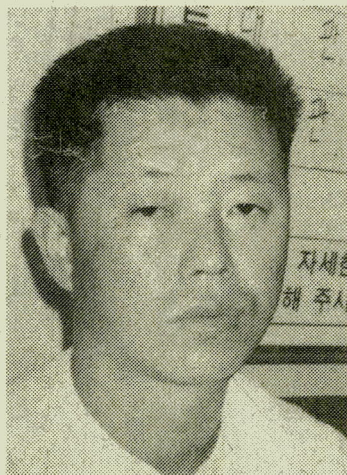
김미경 기자

“손해배상금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제 아내의 죽음이 너무 값싸게 계산되는 것이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내내는 결혼 후 주부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부가 이렇게 사회에서 낮게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 2만3천원으로 계산

지난 21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 등) 주최 ‘정당한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토론회-손해보험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주부 가사노동 재평가 필요성을 역설한 홍성주(34·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사진〉씨의 말이다.

건축업을 하면서 전업주부였던 아내



와 네살·두살짜리 두딸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던 홍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주성화(당시 28살)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보험회사에서 책정해 준 보상액이

총 4천3백28만7천6백43원이었습니다. 상실수익액인가 뭔가를 계산하면서 아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최저임금인 일용인노임으로 계산해 월 57만9천9백75원으로 하더군요. 또 55살까지 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씨는 아내가 하루 일하는 대가가 최저 3만원선인 파출부 비용에도 못미치는 2만3천원으로 책정된 사실에 분개했다. 실제 자신의 수입원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축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생활이 갑자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리면서 홍씨의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홍씨는 2억원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최하 파출부 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과 주부에게는 일요일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을 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생계비 공제도 주부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함께 산출해낸 액수입니다.”

최하 파출부비용이상 요구

현재 3차 재판을 마쳤고 오는 24일 서울지방법원 합의 37부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홍씨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자신뿐 아니라 많은 주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주부가 보통노임 정도의 일용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는 지난 66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겨우 가능해졌을 뿐이며, 그 후 가정주부의 경력·가정유형 등을 고려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합리적·과학적인 평가기준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재판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